

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·용도지구 등(제7조제1항 관련)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,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,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, 「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,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, 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·지구·단지·권역·구역·특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 및 용도구역
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예정지구 및 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
4. 「하천법」, 「수도법」, 「온천법」, 「소하천정비법」, 「습지보전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역·예정지·지구·지역
5. 「도로법」, 「항만법」, 「항공법」, 「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」, 「신항만 건설촉진법」,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예정지역·예정구역·예정지구·단지·구역·지역
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단지·지역·구역
7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, 「군용전기통신법」에 따른 구역
8. 「학교보건법」, 「문화재보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, 「전통사찰보존법」에 따른 구역·지구
9.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낙농진흥법」,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수산업법」, 「어촌·어항법」, 「농지법」에 따른 구역·지구·휴양지·자연휴양림·지역·임지
10. 「원자력법」에 따른 구역
11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
12.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자연공원법」,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에 따른 지역·지구·구역